

<參 照>

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안하여 우리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노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을 보살피며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노인분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경로사상의 함양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영등포구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이 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육성과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그리고 노인문제 상담·연구 및 고령자 취업 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했으며, 위원회 구성내용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이 되겠으며, 위촉직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 두 분,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전문가 2명이 되겠으며, 위촉직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토록 하였는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권자는 구청장이며 주요 내용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 재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이번에 집행부에서 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주요재원을 보면

이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과 기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바, 출연금의 규모에 따라 정기예금 수익금 등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일반회계 출연금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또는 추경예산 심의시 출연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최소한도 3억 이상 확보후 연차적으로 증가시켜서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지회 육성이라든가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취업 알선 등 7가지로 여러 분야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현대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기금의 목적에 상응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이라든가 또는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기금의 설치가 일반예산과 별도로 우리 구 노인분들 전체의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임을 감안할 때 관련단체의 집중적인 육성 지원은 편향적인 지원이 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포괄적인 분야에 사용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한 것은 부족한 감이 있으며, 사안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위촉직인 구의원님과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민간분야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타구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시행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조례안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으나 2000년부터 경제적인 여건과

본 조례안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지방자치법 내용과 자치구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 3. 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 3. 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자치구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

2001년 자치구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

(2001.1.1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지역	조례 제정일	기금 조성 실적 현황					비고
		'98년 이전	'99년 조성액	2000년 조성액	총계	위원장	
연합회	'93. 6.14.	10,000			10,000		
종로구	'97. 1.20.			120	120	부구청장	
중 구	'99.12.15.					"	
용산구	'97.12.10.	100	100	300	500	"	
성동구	2000.6.15.					"	
광진구	'96.11.20.	60	30	50	140	"	
동대문구	2000.4.10.					"	
중랑구	'99.12.31.			100	100	"	
성북구	'96.10.21.	300	300	201	801	"	
도봉구	미제정						
강북구	'98. 9.24.			50	50	부구청장	
노원구	'96.10. 2.	200	100	100	400	생활국장	
은평구	'98. 9.30.		100	300	400	부구청장	
서대문구	'95.12.28.	184	94	72	350	"	
마포구	'97.11.20.		200	100	300	"	
양천구	'95.11.15.	360	40	200	600	생활국장	
강서구	'97.12.15.	100		200	300	부구청장	
구로구	'97.12.31.	150	70	70	290	"	
금천구	'98.12.31.		55	145	200	"	
영등포구	미제정(추진중)						
동작구	'97. 5.28.	100	100	100	300	부구청장	
관악구	'97.10.17.	100		100	200	"	
서초구	'99. 3.30.		50	100	150	"	
강남구	미제정(추진중)						
송파구	'96.12.20.	51		19	70	부구청장	
강동구	'98. 5. 1.		30	100	130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柴鍾德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金東喆 委員 김동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할 사업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3개 구청 외의 다른 자치구도 전부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韓德天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2001년 1월 1일 현재 각 구에서 조성된 금액이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金東喆 委員 각 자치구별로 나온 게 있는지 현황 한 번 쥬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韓德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붙어있습니다.

○金東喆 委員 뒤에 있는 것?

○社會福祉課長 韓德天 예.

○金東喆 委員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일부, 한 50% 받아서 기금을 확대 조성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여성복지기금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보류해놓았는데 이렇게 노인복지를 하게 되면 여성복지도 나와야 되고 청소년복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이렇게 노인이 되면 여성문제가 나오고, 여성이 되면 또 청소년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 뜻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韓德天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으로 기금이 나눠져 있다가 총괄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노인복지 문제가